

건설공사 표준품셈 제 · 개정 절차와 공포까지

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필요한 노무 · 자재 및 장비의 정확한 투입량을 알아야 한다. 이를 위해 정부는 1970년부터 표준품셈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고 있다.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 · 개정 희망항목 조사와 현장실사,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에서 매년 상 · 하반기에 제 · 개정 내용을 공포하고 있다. 이번 호에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표준품셈 제 · 개정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. 매년 개정된 기계설비 표준품셈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인쇄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있으며, 협회 홈페이지(www.kmcca.or.kr → 자료실 → 각종기준표 → 표준품셈/일위대가표)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. [편집자주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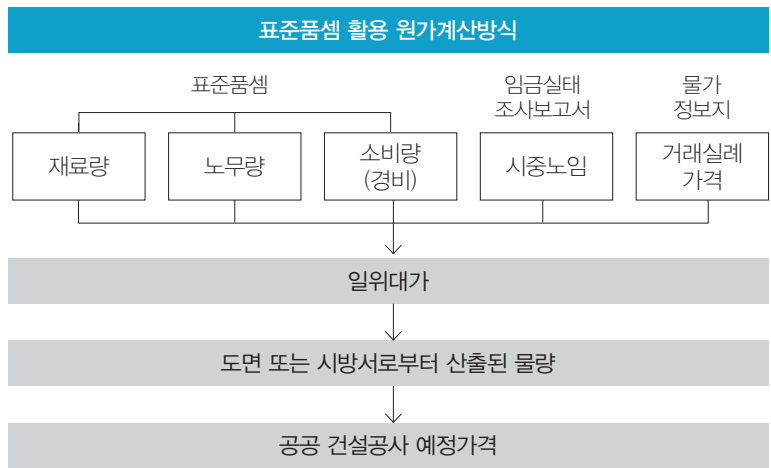
가. 표준품셈이란

‘표준품셈’은 정부에서 제정한 원가계산 가격산정의 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건설공사의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법 및 공정을 기준으로 단위수량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량, 노무량, 장비 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적산기준을 말한다.

나. 적용범위

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

다. 표준품셈을 활용한 원가계산 방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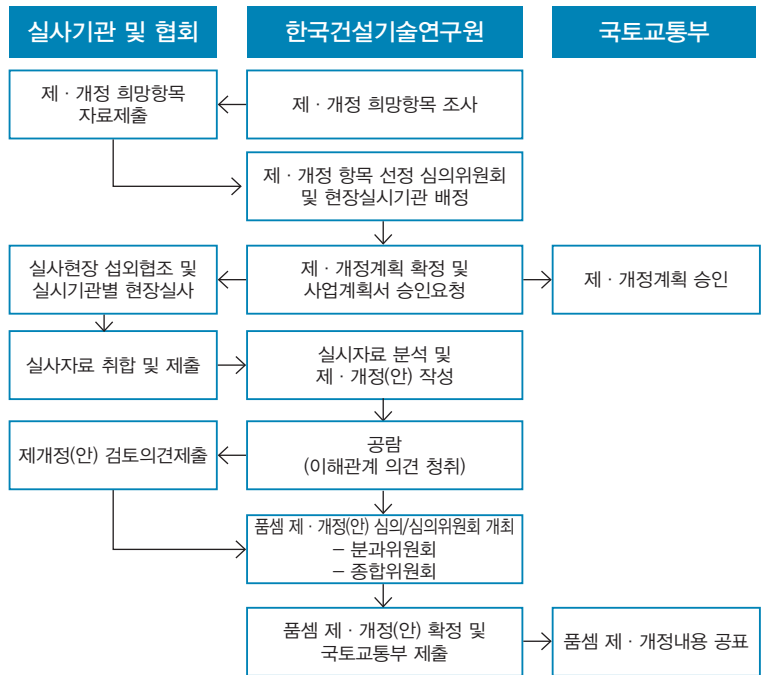
- 표준품셈 적용 구성비목 및 산정방법

비목	내용	산정방법
재료비	공사목적물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및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 및 가설재의 가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접재료비 = 직접재료량(표준품셈)×단위가격(거래실례가격) 간접재료비 = 간접재료량(표준품셈)×단위가격(거래실례가격)
노무비	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게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접노무비 = 노무량(표준품셈)×시중노임단가 간접노무비 = 직접노무비×요율
경비	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비,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, 기계경비, 품질관리비, 보험료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접계산비목 : 기계경비, 운반비, 가설비 등 15개 항목(표준품셈, 계약에 의해 직접 계산) 간접적용비목 : 보험료, 안전관리비, 기타경비 등 11개 항목(법적요율에 의해 계산)

라. 표준품셈 법적근거
및 관리기관

- 1) 법적근거
 -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(국토부 훈령 제493호)
- 2) 관리기관
 - 주무부처 : 국토교통부
 - 관리단체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
 - 유관기관 : 지자체 및 발주처, 협회 등 관련단체

마. 표준품셈 제·개정
절차 및 일정



1) 표준품셈 제·개정 절차

-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매년 초 관련기관(발주기관) 및 협회(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건설협회 등)를 대상으로 표준품셈 개정 희망항목 조사
- ② 관련기관 및 협회는 소속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연도에 제·개정 필요성이 있는 표준품셈 항목 제출
- ③ 이를 종합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당해 연도에 개정할 표준품셈 항목 선정 심의를 거쳐 개정 대상 항목 확정
- ④ 국토교통부의 표준품셈 개정계획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, 실시기관은 관련기관 및 협회의 참관 하에 개정항목에 관한 현장실사 수행

- ⑤ 실사기관이 현장실사를 통해 얻은 실사 결과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
- 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사기관의 현장실사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표준품셈 개정(안) 작성
- ⑦ 표준품셈 개정(안)에 대해 공람을 통해 관련기관 및 협회의 의견 청취
- ⑧ (분과·종합)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품셈 개정(안) 심의
- ⑨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출한 표준품셈 개정(안) 공표

2) 표준품셈 제·개정 일정

추진 일정	추진 내용
전년 11월	• 다음년도 적용 제·개정희망 항목 조사
당년 2월	• 개정 대상항목 선정 그룹별 심의 회의
3월, 수시	• 개정 대상항목 실사현장 추천
4~11월	• 개정 대상항목별 현장실사 - 발주기관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협회, 용역업체 합동실사
6월, 8월, 10월	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 표준품셈 개정 자문회의(3회) -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용역업체와 품셈개정관련 수시 업무 협의
6월, 11월	• 공람 전 협회 내 품셈 자문회의 의견수렴
6월, 11월	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·개정안 공람
7월, 12월	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·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
7월, 12월	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 품셈 제·개정 분과 및 종합심의 회의
7월, 12월	• 국토부 승인 및 공표

바. 표준품셈 현장실사
지침

1) 기본원칙

- 표준품셈 조사는 현장실사를 기본원칙으로 한다.
- 현장실사의 범위는 현장실측, 서면자료 조사, 인터뷰, 통신매체(전화 및 이메일) 조사 등을 통칭한다.
- 현장실측이 기본원칙이지만 해당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
- 다수의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. 적정 현장 수는 해당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다.
- 본 작업 이외의 작업(준비, 정리)과 손실시간 등과 같이 현장 실측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작업 대비 비율을 조사하여 반영하거나 다른 보조적인 실사 방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.

2) 실사기간 및 특징

- 현장실사는 매년 4월~10월까지 수행하며, 공종에 따라 별도 기간에 조사할 수 있다.
- 공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, 규모별, 시설물별, 계절별 다양한 실사자료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년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3) 실사기간 사전준비

① 현장실사팀 구성

- 표준품셈의 조사를 위해 조사책임자 및 조사원 등을 선정하고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.
- 조사항목의 관련 시방서 및 설계기준을 조사하며 사전에 숙지한다.

② 자문단 구성

- 현장실사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조사항목 또는 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.
- 자문단 구성은 관련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발주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, 자문단은 시공절차 및 조사서식, 조사과정 참여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.

③ 실사방법은 현장 실측, 인터뷰, 서면조사, 통신매체를 통한 조사, 작업일지 및 감리보고서 등 자료 조사 등을 고려하여 실사 방법을 선정한다.

4) 실사 서식 작성

- 현장실사 서식은 해당 사업의 개요, 해당 작업의 프로세스(준비, 분정리 작업 포함), 노무·자재·장비 등의 투입량, 작업 범위, 작업



조건, 특이 사항, 현행 표준품셈과의 불일치 및 변동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다.

5) 현장실사

- ① 현장실사는 현장실측과 현장실측 외 실사로 구분된다.
 - 현장 실측 : 사전에 작성된 실사서식과 표준 작업 사이클을 기준으로 실사 대상 현장에서 목적측(目測)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의 방법으로 현장 실측 실시
 - 현장 실측외 실사: 현장 실측 외 실사방법인 서면 자료 조사, 인터뷰, 통신매체조사 등을 통해 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소장(일반, 전문), 공사 담당자(일반, 전문), 작업반장, 기능공, 감리원, 장비업자 등 해당 공종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
- ② 현장실사는 감리·감독자 또는 현장책임자(또는 대행자)에게 실사 목적을 설명하고, 감리·감독자 입회 하에 수행하며, 부재 시에는 감독·감리자가 지명한 자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③ 실사자는 각 공종별로 시방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작업방법과 시공순서에 입각하여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실사를 실시한다.
- ④ 실사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3일 이상으로 하되, 반복공정으로 인해 동일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, 단위개소 작업물량인 경우, 특수한 경우 등은 실사자의 판단 하에 1일 이하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작업시간은 본 작업시간(휴식시간, 간식시간, 이동시간, 대기시간 등 포함) 외 작업준비부터 작업정리까지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여 실시한다.
- ⑥ 현장여건 상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의 실측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사자의 판단에 따라 본 작업시간의 10% 범위 내에서 준비 및 정리시간을 반영할 수 있다.
- ⑦ 1일 작업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, 실사결과를 종합할 때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.
- ⑧ 계속이동작업, 분산작업 등으로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작업장소에서 작업장소 간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이동시간을 본 작업시간에 포함한다.
- ⑨ 현장 내의 소운반(일반적으로 20m이내)은 포함하며, 잡재료는 주재료에 대한 비율로 명시하고, 공구 및 경장비 손료는 인력품에 대한 비율로 명시한다.

- ⑩ 상기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실사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되, 관련내용을 실사결과와 함께 제출하며, 현장실사 시 조사양식을 사용하나, 특수한 공종은 별도 양식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⑪ 측량부문 현장실사 시 공사비관리기관 업무담당자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한다.

사. 현장실사 유의사항

- ① 현장실사 진행 시 반드시 시방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 시공 현장을 기준으로 하며, 기상상태 또한 공사시방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 실사자는 표준품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여 비합리적인 실사치가 도출되지 않도록 한다.
- ③ 실사항목에 해당되는 주작업은 물론 부대작업 또는 연관작업 공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왜곡된 실사치가 되지 않도록 한다. ↻

아. 기계설비 표준품셈 제·개정 현황

구분	항목수	주요 개정 항목
2012년	33개	강관·동관·스테인리스강관·주철관 배관, 비금속 배관, 배관부속품 및 밸브장치 설치 등
2013년	41개	단열공사, 위생기구설치, 소화설비 등
2014년	40개	덕트설비, 가스설비공사, 도장 및 방청공사, 펌프·송풍기 설치 등
2015년	26개	보일러, 공기조화기, 배기팬, 가스설비시험 등